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I·II 유형 안내

1. 국가장학금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대학생(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대하여 지원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하여 소득·재산 환산액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대학생에 대하여 지원 가능함
 - * 국가장학금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지원구간이 분류된 자
-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만 지원 가능
 -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제도 시행 이전 입학생도 포함) 또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을 경우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 필요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지원

구분	성적 기준
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점 환산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는 계절학기 미포함 * 졸업학기 학생은 제외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성적산출(백점 환산 점수)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예과(수의대, 의대) 수료 및 본과 진학을 앞둔 경우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과 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인정 * 잔여학점: 예과 수료 필요학점 - 예과 수료 직전학기까지 누적 이수학점 - 성적 기준은 적용 ▶ 자립준비청년 성적 기준 폐지(최저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 적용 ▶ 지원 1~3구간은 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장학금 수혜를 허용

- 학제 및 정규학기(1년 2학기)를 기준으로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 * 4년제는 8회, 5년제는 10회, 6년제는 12회까지 가능하며, 편입생 또는 재입학생은 편입 또는 재입학한 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한 최대 지원 횟수에서 편입 전 또는 재입학 전에 지원 받은 수혜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를 한도로 지원
-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할 경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이 자동으로 적용**됨(적용여부 선택 불가)
 - 단, 신청기간에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등의 사유로 1차 신청이 불가능했음을 증명(대학 입증 및 요청)하는 경우 심사 후 구제 기회 부여 가능

-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금액

〈 2023년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금액 〉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2. 다자녀(세 자녀 이상) 국가장학금

-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의 모든 자녀(연령 무관, 미혼에 한함)
- 국가장학금 II 유형,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8구간 이하)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금액

〈 2023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구간별 연간 지원금액 〉

지원구간	다자녀(신청자 본인 서열 첫째, 둘째)		다자녀 (신청자 본인 서열 셋째 이상)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기초·차상위	350만원 (단, 둘째는 전액)	700만원 (단, 둘째는 전액)	등록금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225만원	450만원	
5구간	225만원	450만원	
6구간	225만원	450만원	
7구간	225만원	450만원	
8구간	225만원	450만원	

3. 국가장학금 II 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대학 자체지원기준을 수립하여 국가장학금 I 유형 신청자에 한하여 지원
 - ※ I 유형 승인된 자만 II 유형 수혜 가능, 수업연한 초과자 제외
- 우리 대학 자체지원기준
 - 국가장학금 I·II 유형 지원금과 교내 맞춤형 장학금을 연계하여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생의 등록금 전액 지원
 - 수업연한 초과자, 학사경고자 및 학사경고에 준하는 성적을 취득한 자는 II 유형 수혜 불가

4. 기타 안내사항

가.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 ※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학부생만), 국가근로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생활비), 해외수학장학금,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등의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나. 수업연한 초과자

- 수업연한 초과자는 등록금 우선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수강신청 취소마감 이후 등록금이 확정되면 장학금을 직접지급(대출상환)함
- 국가장학금 I 유형만 지급함,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급 대상 아님

다. 복귀생

-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II 유형도 지급 (※ 휴학 당시 기수혜자는 지급 제외)

라.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I·II 유형은 학부생만 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 I·II 유형 선발결과는 추후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등록금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I·II 유형”으로 명시하여 우선감면, 우선감면 미 적용자는 최종 등록 후에 개별 지급)
- 휴학 중인 학생은 복학(귀)신청을 해야 국가장학금 심사가 가능하므로 신속하게 복학(귀) 신청을 완료할 것
-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장학금 수혜 후 반드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함
(이중수혜일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포털[mysnu]에 본인명의 계좌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장학금 수혜 가능

마. 연락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 학생처 장학복지과 국가장학금 문의 ☎ 880-5079
- 학생처 장학복지과 학자금대출 문의 ☎ 880-5078
- 단과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학	전화번호	대학	전화번호
인문대학	880-6007	사범대학	880-7606
사회과학대학	880-2289	생활과학대학	880-6805
자연과학대학	880-6494	수의과대학	880-1210
간호대학	740-8461	약학대학	880-7826
경영대학	880-6908	음악대학	880-7903
공과대학	880-7010	의과대학	740-8037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자유전공학부	880-9535
미술대학	880-6883	치의학대학원	880-2301

※ 장학금은 포털[mysnu]에 입력된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개인정보수정 방법>

- ① 학생포털 메뉴 중 학사정보→나의정보→개인정보수정 선택
- ② 학생인적 탭 선택, 개인 신상정보 조회
- ③ 장학금 등을 지급받을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입력/수정
- ④ 장학금 수혜 정보 등을 전달받을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
- ⑤ 저장 버튼 클릭, 개인 신상정보 변경 완료

